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국채 10 년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효력발생일 : 2026 년 11 월 19 일
3. 정정사유 :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변동성(최대손실예상액) 변경사항 반영 (12.37% → 10.54%, 4 등급 유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VaR)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2.37%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VaR)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0.54%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국채 10 년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효력발생일 : 2026 년 11 월 19 일
3. 정정사유 :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변동성(최대손실예상액) 변경사항 반영 (12.37% → 10.54%, 4 등급 유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